

해 양 수 산 부

훈 계 요 구

제 목 ○○○ ○○○ ○○사업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등 소홀

기 관 명 기장군

훈계대상자 ① 기장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② 기장군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③ 기장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○주사보 ○○○은 2014. 3. 5.부터 2015. 2. 1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2. 2.부터 2015. 11. 12.까지, 지방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11. 13.부터 2017. 2. 5.까지 기장군 ○○○○과에 근무하면서 ○○○○○○ ○○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.

기장군은 기상악화 시 소형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,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【표 1】 과 같이 ○○○ ○○○ ○○사업(국비 50%, 지방비 50%)을 추진하였다.

【표 1】 최근 3년간 ○○○ ○○○ ○○사업 현황

사업연도	사업비(천원)			비 고
	계	국비	지방비	
합 계	500,000	250,000	250,000	10기
2013	150,000	75,000	75,000	3기
2014	150,000	75,000	75,000	3기
2015	200,000	100,000	100,000	4기

해양수산부의 「어업기반정비 사업시행지침」 중 ‘어업기반정비 사업비 등 집행기준’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○○○ ○○○ ○○ 사업비는 ○○○ ○○와 보수·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(증권)을 제출받은 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기장군은 ○○○ ○○○ ○○사업 추진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,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률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증권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고,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그러나 기장군은 【표 2】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○○○ ○○○ 10

기를 설치함에 있어 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, 하자보수보증금(증권)도 제출받지 않고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그 결과 하자검사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○○○ ○○○ ○○예산의 일부가 보수·보강에 소요될 우려가 있다.

【표 2】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

사업연도	인양하중 (톤)	설치장소	사업비 (천원)	준공년월일	하자보수증권 첨부	
					여	부
계			500,000			
2014	5	○○리 ○○-○○지선	50,000	2014.05.27.	-	○
	5	○○항	50,000	2014.05.29.	-	○
	5	○○항	50,000	2014.05.26.	-	○
2015	5	○○항	50,000	2015.05.11.	-	○
	5	○○항	50,000	2015.05.11.	-	○
	5	○○항	50,000	2015.05.11.	-	○
2016	5	○○리 ○○○-○번지	50,000	2016.04.29.	-	○
	5	○○항	50,000	2016.03.11.	-	○
	5	○○항	50,000	2016.03.11.	-	○
	5	○○리 ○-○지선	50,000	2016.04.29.	-	○

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

【훈계】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